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황과 실태조사 추진 전략¹⁾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공공 부문에서 개별돌봄서비스의 인력 양성, 서비스 수요자와 인력의 매칭, 비용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영유아 및 초등 돌봄의 체계를 ‘기관’중심으로 구축해 온 그간의 돌봄 정책의 기초와 돌봄 서비스 주 수요층의 기관돌봄서비스 이용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는 개별돌봄서비스에의 욕구를 민간 영역에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선진적인 의미를 지닌다. 2022년은 2007년 작은 규모의 사업으로 시작하여 그때그때의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해 개선해 온 아이돌봄서비스가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역사에서 의미가 매우 큰 해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도입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자리 잡아 온 연혁과 현재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추진 전략을 개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들어가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이 공공 부문에서 개별돌봄서비스의 인력 양성, 서비스 수요자와 인력의 매칭, 비용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06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일시보육’ 수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시간과 부모의 출·퇴

근 시간 사이에 발생하는 ‘틈새돌봄’, 집단으로 제공되는 기관 보육·교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과 가정에서의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선호의 존재 등 기관보육·교육서비스로는 한계가 있는 ‘돌봄 사각지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영유아 대상의 무상 보육·교육 정책의 실현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기관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에서 개별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공공의 서비스로 가정에서

1) 본고는 2021년도에 수행된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이정원·조숙인·엄지원·이상인(202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하며, 일부 수치 및 내용을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정리하였음)

의 개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러한 개별돌봄서비스에의 욕구 대응을 민간 영역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정책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선진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도입 후 우리나라 육아정책의 큰 틀 안에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자리잡아 온 연혁과 현재의 사업 현황,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도입과 추진 전략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연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6년 천안과 울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연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돌보미 130명을 양성하여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까지 아동에 대한 긴급한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²⁾. 당시 야근 등 갑작스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아동이 그 대상이었고, 가정과 공동체 내 자녀양육지원기능이 약화되어 공적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 도입 배경이다³⁾. 아이돌보미는 4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아 양성되었고, 이용요금은 전액 수요자 부담으로 시간당 6천원이었다⁴⁾. 이러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6년 11월에 발표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지원서비스 다양화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다⁵⁾.

정부가 예산을 마련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도입한 것은 2007년이며, 2009년에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었다⁶⁾. 영아중일제 서비스는 2010년에 0세아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었고 이후 지원대상이 지속 확대되어 2017년 이래로 만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⁷⁾.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운영근거가 되는 「아이돌봄 지원법」은 2012년에 제정되었다. 서비스 제공인력인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는데 4대 보험 가입(‘13년), 휴일 및 야간수당 지급(‘15년), 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19년)이 이루어졌다. 영아중일제 대기관리시스템은 2015년부터 운영되었고, 2019년에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 되었다. 2018년부터는 정부지원율이 지속 상향되어왔으며,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도 확대되어 2021년 기준 연간 840시간이 되었다. 2022년에는 지원대상 기준의 정비로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돌봄 공백’ 기준 중 ‘다자녀 가정’의 범위를 만 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서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1명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조손가정의 양육공백 판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부모 가정 판정기준 및 요금 규정을 신설하였다⁸⁾(표 1 참조).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6. 6. 21). 긴급상황 발생시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6. 6. 21). 긴급상황 발생시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6. 6. 21). 긴급상황 발생시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5) 재경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 외(2006. 11).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요약본).
6)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7)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8)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표 1〉 아이돌봄 지원사업 연혁

추진년도	추진경과
2007년	- 아이돌봄 지원사업 및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신규 실시
2008년	-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65개소)
2009년	- 아이돌봄 지원사업 전국 확대, 장애아 양육지원 사업 분리 운영
2010년	-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실시(0세아)
2011년	- 영아종일제 최소 이용시간 변경(160시간 → 120시간)
2012년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개칭
	- 아이돌봄 지원법 제정(2012. 8. 시행) - 지원대상 확대(소득하위 70% 이하 → 모든 취업부모 대상)
2013년	- 시간제 돌봄 지원예산 확대
	- 아이돌봄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적립금 지급(2013. 9.) - 취약계층 자녀 등에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근거 조항 신설(2013. 11.)
2014년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12개월 → 만 24개월)
2015년	- 영아종일제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 아이돌봄 휴일 및 야간활동수당 지급
2016년	-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변경(전국가구 평균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17년	-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연령 확대(만 24개월 → 만 36개월)
	- 정부지원 확대
2018년	*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을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 → 600시간)
	- 정부지원 확대(중위소득 120% → 150%로 상향)
2019년	*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을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600시간 → 720시간) * 아이돌봄 처우개선(주휴 등 법정수당 지급)
	- 중증장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 시간 특례(연 720시간 → 960시간)
2020년	- 정부지원 확대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720시간 → 840시간)
2021년	*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정부지원을 상향(5%p)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요금규정 신설
	- 지원대상 기준 정비로 지원 강화
2022년	*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포함, 만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조손가정 양육공백 판정 등 구체적 기준 마련 * 청소년 부모 가정 판정기준 및 요금규정 신설
	- 정부지원 확대 * 출산에 의한 돌봄공백시 서비스 이용기간 확대(총 90일 분할이용 → 총5개월 계속사용)

자료: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1, 8.

3. 아이돌봄지원사업 현황

가. 서비스 유형 및 비용 지원

1) 서비스 유형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는 최초 부모의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서비스로 출발하였으나, 2010년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 종일제 서비스’가 추가 도입되는 등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유형이 지속적으로 발굴, 도입되고 있다. 그 결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유형으로 분화되어, 2022년 현재 돌봄 대상 및 돌봄활동의 내용(범위)에 따라 영아종

〈표 2〉 돌봄 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따른 서비스 유형(2022년 기준)

구분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기본형	종합형		
돌봄 대상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기관 이용 아동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돌봄 활동 범위	- 영아 돌봄 관련 활동 전반 - 대상 아동 관찰사항 이용가정에 전달	-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 임시보육, 놀이활동 - 준비된 간식 및 식사 챙기기(조리 미포함) - 대상 아동 관찰사항 이용가정에 전달	- 기본형 서비스의 돌봄활동 - 아동과 관련한 가사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 돌봄 대상 건강, 질병 관련 특이사항을 이용 가정에 전달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 대 돌봄 보조
최소 이용시간	1회 3시간 이상 (월 최소 60시간 이상 이용시 정부 지원)	1회 2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1회 2시간 이상
정부지원 시간	월 60~200시간 ¹⁰⁾	연 840시간 (* 중증장애 부모 자녀대상 정부지원시간 특례 960시간 적용)			-
비고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 중 하나로만 신청 가능(정부지원 중복 금지)				

주: 집필자가 여성가족부(2022a), pp. 47~55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서비스 등으로 구분 제공되며, 서비스 신청·이용 방식에 따라서는 정기이용서비스와 일시연계서비스 등이 있다⁹⁾.

먼저 돌봄 대상 및 서비스 내용에 따른 유형을 살펴보면,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만을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제외한 ‘시간제(종합형 포함)’,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모두 기본적으로 ‘시간제’ 서비스 유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1회 이용시 최소 3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월 최소 60시간을 이용해야 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¹¹⁾.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가정 내 양육이 선호되는 만 36개월 이하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전염병과 감기·눈병·구내염 등¹²⁾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기관 및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동을 대상으로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코로나 19 등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기관연계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 정부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 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서비스로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볼 때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

9)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0) ‘가’~‘다’형에 대해 월 60시간~200시간 이내로 이용 비용을 지원함(여성가족부, 2022a: 47).

11)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2)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여성가족부, 2022a: 51).

〈표 3〉 서비스 신청·이용 방식에 따른 서비스 유형(2022년 기준)

구분	이용대상	이용 방식	비고
정기이용서비스	정회원(정기) 등급	정기적 이용	‘대기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이후부터 정기이용서비스 가능
일시연계서비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 가능한 아이돌보미에 직접 서비스 요청	아이돌봄서비스 앱, PC를 통해 신청, 확인

주: 집필자가 여성가족부(2022a), pp. 39-43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이다. 이때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기관에서의 아동 돌봄을 보조하는 역할에 한정되며,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데 있어 아이돌보미 1인당 돌봄 가능한 아동수를 만 0세~2세 이하는 최대 3명까지, 만 3세~12세 이하까지는 최대 5명으로 제한하고,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의 아동을 동시 돌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유형 중 동일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영아중일제’와 ‘시간제’ 서비스 중 하나로만 신청 가능하도록 하여 정부지원의 중복을 금지하고 있다¹³⁾.

한편, 서비스 신청·이용방식에 따라서는 정회원(정기) 등급에서 이용 가능한 ‘정기이용서비스’와 모든 등급에서 이용 가능한 ‘일시연계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이용서비스는 문자 그대로 아이돌보미가 연계된 후 서비스를 특정 요일, 시간대, 시간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정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기자의 순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서비스로 ‘대기서비스’도 있다. 이용자가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대기가점을 등록하고 대기가점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기간에 ‘정기이용 대기신청서’를 제출한다(여성가족부, 2022a: 40).

일시연계서비스는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이용 가능하며, 정기이용서비스 신청 이외에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일시연계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pc,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통해 이용자의 신청을 확인 가능하다(여성가족부, 2022a: 42-43).

2) 비용지원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 발생 여부와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에 정부지원율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다. 양육공백이 있는 가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 기준 75% 이하인 가구는 ‘가형’, 120% 이하는 ‘나형’, 150% 이하는 ‘다형’으로 분류되어 정부지원금이 가형 > 나형 > 다형의 순으로 차등되며,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거나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라형’으로 본인부담금 100%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¹⁴⁾.

정부지원 금액은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며, 가구의 특성(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과 돌봄 자녀의 출생년도 등에 따라 세부적 기준이 상이하다(표 4, 표 5참조). 정부지원 비율은

13)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4)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1년도부터 영아종일제, 시간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정부지원율이 상향(5%p)되었다¹⁵⁾. 서비스 유형별로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2022년도 기준 시간당 단가(10,550원)에 대해 일반가정의 정부지원율은 가형(85%), 나형(60%), 다형(15%)이며, 중위소득 75%이하인 '가형'에 속하는 가구에 한하여 한부모가정이나 장애부모가정, 장

애아동가정의 경우 정부지원율을 90%까지 지원하고 있다¹⁶⁾.

시간제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돌봄대상 아동의 출생년도에 따라 지원비율이 이원화되어 있다.

시간제서비스는 영유아와 초등 1학년까지(A형)의 경우 지원유형별 정부지원비율이 영아종일제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초등 2학년 이상(B형)에

〈표 4〉 2022년 영아종일제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0,550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지원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 ^{주1)}			
정부지원	8,968원 (85%)	9,495원 (90%)	6,330원 (60%)	1,583원 (15%)	없음
본인부담	1,582원 (15%)	1,055원 (10%)	4,220원 (40%)	8,967원 (85%)	10,550원 (100%)

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돌봄대상이 장애아동인 경우 적용), 청소년부모가정 대상
자료: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48.

〈표 5〉 2022년 시간제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시간제서비스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지원유형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 ^{주1)}							
		아동 출생기준 ^{주2)}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0,550원)	정부지원	8,968원 (85%)	7,913원 (75%)	9,495원 (90%)	8,440원 (80%)	6,330원 (60%)	2,110원 (20%)	1,583원 (15%)	1,583원 (15%)	없음	없음
	본인부담	1,582원 (15%)	2,637원 (25%)	1,055원 (10%)	2,110원 (20%)	4,220원 (40%)	8,440원 (80%)	8,967원 (85%)	8,967원 (85%)	10,550원 (100%)	10,550원 (100%)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3,720원)	정부지원	8,968원	7,913원	9,495원	8,440원	6,330원	2,110원	1,583원	1,583원	없음	없음
	본인부담	4,752원	5,807원	4,225원	5,280원	7,390원	11,610원	12,137원	12,137원	13,720원	13,720원

주: 1)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대상
2) A형: 2015.1.1.이후 출생(영유아-초1), B형: 2014.12.31. 이전 출생(초2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p. 50-51.

15)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6)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비해 정부지원이 높은 편이며, 초등 2학년 이상(B형)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가형'만 정부지원비율이 높고, '나형'과 '다형'은 본인부담금 비율이 높다¹⁷⁾.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중 A형(2015.1.1.이후 출생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2년도 기준 시간당 10,550원에 대해 일반가정의 정부지원율은 가형(85%), 나형(60%), 다형(15%)이며, 한부모가정 등의 경우 정부지원율은 가형(90%)에 한해 일반가정보다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있다¹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은 가사가 포함된 형태로 본인부담금이 기본형에 비해 전체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¹⁹⁾.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에 비해 정부지원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표 6 참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를 적용받는다. 보통 본인부담금 100%로 이용하던 '라형'가구도 이용비용의 50%를 정부가 지

원하며, '나형'과 '다형'도 자녀의 출생년도에 따라 50~60% 정부지원을 받는다²⁰⁾.

3)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전염병 대응단계별로 이용절차 간소화, 이용금액 자부담 완화 및 정부지원시간 확대 등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대책을 마련하여²¹⁾,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증가한 돌봄공백과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주요한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으로는 어린이집 등 휴원, 휴교, 온라인수업 전환시 기존 정부지원시간과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하고²²⁾, 정부지원 대상에 '라'형을 일시적으로 포함하고 각 지원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기존의 15%~85%에서 40%~90%

〈표 6〉 2022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지원유형 및 금액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시간당 12,660원)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50% 초과	
지원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일반가정		한부모가정 등 ^{주1)}							
아동 출생기준 ^{주2)}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
정부지원	10,761원 (85%)	9,495원 (75%)	11,394원 (90%)	10,128원 (80%)	7,596원 (6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본인부담	1,899원 (15%)	3,165원 (25%)	1,266원 (10%)	2,532원 (20%)	5,064원 (4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6,330원 (50%)

주: 1)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대상

2) A형: 2015.1.1.이후 출생(영유아-초1), B형: 2014.12.31. 이전 출생(초2 이상)

자료: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53.

17)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8)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19)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0) 여성가족부(2022a). 2022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2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6. 18). 이정옥 장관,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살핀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22) 이와 관련한 정부지원 확대 대상 시간은 오전 8시~오후 4시까지이며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 요건에 해당해야 함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0. 9. 4)

로 늘린 것이다²³⁾.

이와 더불어 2021년 3월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한시적 특별지원 서비스도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①의료 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②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③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었다. 의료인력 지원특례는 24시간 근무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 및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²⁴⁾.

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²⁵⁾

1) 이용가구

가) 이용 가구 추이

아이돌봄서비스는 2007년 여성가족부의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이래, 2009년 전국사업으로 확대, 2010년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사업 신

규 도입 등(여성가족부, 2018: 31) 서비스 유형의 다양화와, 지원의 꾸준한 확대로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표 7〉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수는 2011년 39,138가구에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에 70,485가구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적인 이용 가구 수 감소가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매년 지속적인 이용 가구 수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로 크게 구분할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는 주로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체 가구중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연도는 2015년으로 영아종일제 이용가구 비율이 9.2%에 해당하였으며, 이후 전체 이용 가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가구수가 감소하고 있어 영아종일제 이용 가구 수는 3~5% 수준 정도이다.

이는 매년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영아의 기관 이용률은 증가하면서 보육

〈표 7〉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단위: 가구, 시간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8	2019	2020	2021
이용가구 계	39,138	51,393	57,687	63,546	64,591	70,485	59,663	71,789
시간제	37,934	47,700	52,354	58,489	60,053	66,783	56,525	57,454
영아종일제	1,204	3,693	5,333	5,057	4,538	3,702	3,138	2,617
기타	-	-	-	-	-	-	-	11,718
가구별 월평균 이용시간	-	-	-	86.9	88.5	85.2	93.9	96.7

주: 1) 기타 - 일시연계, 기관연계,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

2) 시간제: 시간제 일반형, 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을 포함함.

3)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합하여 구성함.

자료: 1) 이정원 외(2021).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정비방안. p.41 〈표 II-2-8〉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front/upc/comm/htmlInfo.do?H_MENU_CD=0201&L_MENU_CD=020102&MENU_SITE_ID=FRONT&SEQ=16. 2022. 7.22, 인출.

2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6. 18). 이정옥 장관,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서비스 현장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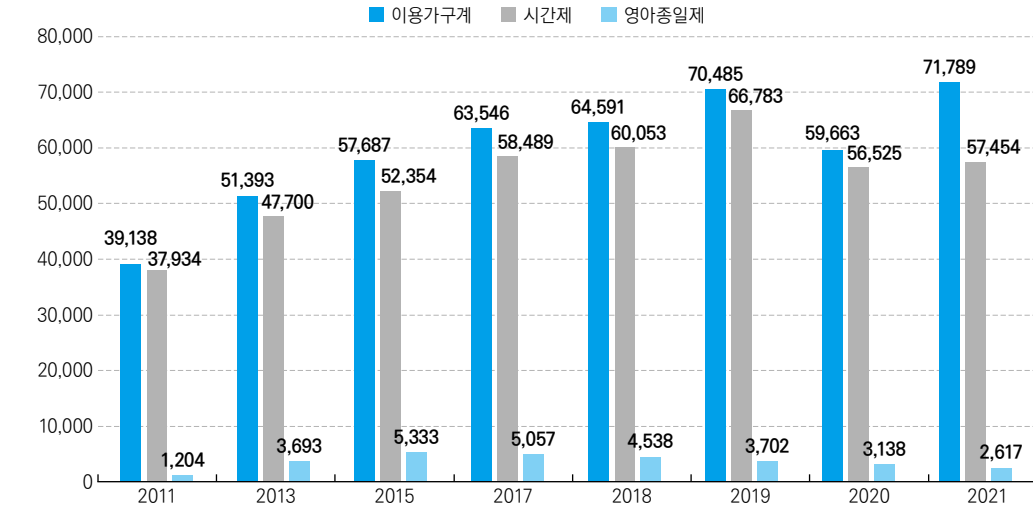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2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2. 23). 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25) 이정원 외(2021)의 연구에서 여성부 내부 자료를 활용해 구성한 2020년도 이용 현황을 제시함.

[그림 1] 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추이

단위: 가구



주: <표 7>을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

<표 8> 서비스 유형별·소득유형별 이용가구 수(2020)

단위: 가구(%)

구분	계	가형 (75% 이하)	나형 (75~120% 이하)	다형 (120~150% 이하)	라형 (150% 초과)
시간제일반형	53,046(100%)	27,036(51.0%)	11,298(21.3%)	2,564(4.8%)	12,148(22.9%)
시간제종합형	1,246(100%)	644(51.7%)	233(18.7%)	55(4.4%)	314(25.2%)
질병감염아동	2,233(100%)	970(43.3%)	469(21.0%)	162(7.3%)	632(28.3%)
영아종일제	3,138(100%)	1,843(58.7%)	812(25.9%)	67(2.1%)	416(13.3%)
합계	59,663(100.0%)	30,493(51.1%)	12,812(21.5%)	2,848(4.8%)	13,510(22.6%)

출처: 이정원 외(2021), p. <표 IV-1-5>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를 기초로 구성함.

료 지원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료된다.

나) 서비스유형·소득유형별·가구유형별 이용가구

<표 8>에서는 2020년말 현재 이용가구의 이용 서비스 유형과 소득유형을 기준으로 이용 가구 현황을 제시하였다.

2020년 12월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누적 이용가구는 59,663가구로 시간제 일반형의 이용 비중이 88.9%로 가장 높고, 영아종일제 이용가구가 5.3%, 질병감염아동 서비스 3.7%, 시간제종합형 이용가구가 2.1%순으로 나타났다. 즉,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일반형서비스 이용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가구는 '가'형, 75~120%이하의 '나'형, 120~150% 이하의 '다'

형, 150% 초과하는 '라'형으로 구분되며 가~다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20년말 누적 기준 이용가구는 '가'형이 51.1%로 반 이상을 차지하며, '라'형 22.6%, '나'형 21.5%, '다'형 4.8%로 소득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용 비용에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라'형이 지원을 받는 '나', '다'형보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한편, 각 소득유형 집단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의 비율을 살펴보면, 종일제 서비스는 이용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높은 가, 나형에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이돌봄서비스를 가구유형별로는 얼마나 이용했는지 <표 9>에 제시하였다. 2020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유형은 '맞벌이가구'로 전체 이용가구의 51.8%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다자녀가구' 15.4%, '한부모가구' 15.1%, '일반가구' 13.0%, '기타양육부담가구' 2.9%, '장애부모가구' 1.8%, '조손가구' 순으로 이용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

돌봄서비스는 현재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에 대응하는 유용한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외 한부모가구, 다자녀가구 등에도 양육공백을 메꾸고 양육부담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다) 서비스유형·아동연령별 이용 아동 수

한편, 2020년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가구 단위가 아닌 돌봄의 대상이었던 '아동 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2020년 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돌봄 대상이었던) 아동 수는 총 91,715명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한 가구당 평균 1.54명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이었던 전체 아동 수를 서비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시간제일반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이 91.1%로 가구 수 기준보다도 더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²⁶⁾, 영아종일제 4.0%,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2.9%, 시간제종합형 서비스 2.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2세 영아의 비중이 41.4%이며,

<표 9> 가구유형별·서비스유형별 이용가구 수(2020)

단위: 가구(%)								
구분	계	한부모	조손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다자녀	기타 양육부담	일반
시간제일반형	53,046	8,332	9	970	27,027	8,140	1,530	7,038
종합형	1,246	274	0	18	603	157	39	155
질병감염아동	2,233	278	0	30	1,358	192	40	335
영아종일제	3,138	131	0	73	1,894	710	94	236
합계	59,663 (100.0%)	9,015 (15.1%)	9 (0%)	1,091 (1.8%)	30,882 (51.8%)	9,199 (15.4%)	1,703 (2.9%)	7,764 (13.0%)

출처: 이정원 외(2021). p. <표 II-2-12>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26) 이는 영아종일제서비스 또는 시간제서비스 이용가정이 돌봄시간 중에 만 12세이하의 다른 자녀에 대한 시간제서비스 신청도 가능하고,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의 형제·자매를 동시에 돌보는 서비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여성가족부, 2022a).

〈표 10〉 서비스 유형별·연령별 아동 수(2020)

단위: 명, (%)

구분	계	0~2세	3~5세	6~8세	9~12세
시간제일반형	83,575(91.1%)	32,605	28,033	17,390	5,547
시간제종합형	1,855(2.0%)	613	568	441	233
질병감염아동	2,656(2.9%)	1,164	1,166	302	24
영아종일제	3,629(4.0%)	3,629	-	-	-
총계	91,715(100.0%)	38,011(41.4%)	29,767(32.5%)	18,133(19.8%)	5,804(6.3%)

출처: 이정원 외(2021). p. 〈표 IV-1-6〉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를 기초로 구성함.

3~5세 32.5%, 6~8세 19.8%, 9~12세 6.3%의 이용아동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표 10 참조).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는 주로 영아와 유아 위주로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에 비해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이용이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아이돌봄서비스의 주된 이용 대상은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아동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대상인 만 36개월 이하 영아 중에서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아동이 11.1%로 나타났다. 즉,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일반적인 이용대상에 비해 이용 대상 연령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어 전체 이용아동 중에서 그 비중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영아종일제서비스 이용 대상 중에서는 10% 이상을 차지해 영아의 가정 내 양육 지원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영아에 대한 가정 내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이러한 경향은 향후 영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현금 지원이 증가한다면²⁷⁾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 아이돌보미 현황

1) 아이돌보미 수

활동돌보미²⁸⁾ 기준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아이돌보미 수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활동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해마다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의 증가폭이 다른 년도에 비해 높았으며, 2020년의 경우 아이돌보미 수가 2019년에 비해 약 200명 정도 적게 나타나 지난 6년 중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20년 이용에서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해된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정에서 수요가 줄어들었을 수 있으며 수요 감소에 따라 활동돌보미의 이탈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이돌보미 역시 감염병 위험 때문에 소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9년 대비 2020년에 이용 가구 수가 1만여 가구 정도로 대폭 감소했던 결과를 고려하면 이용 가구 수의 감소 대비 아이돌보미의 감소 폭은 비교적 크지 않았다고 볼 수

27) 국정과제 46번 '부모급여' 도입 등

28) 활동도우미 통계 자료는 각 해당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누적 수치를 의미함. 해당년도 중간에 계약이 중단되어 더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는 인원 역시 누적되어 포함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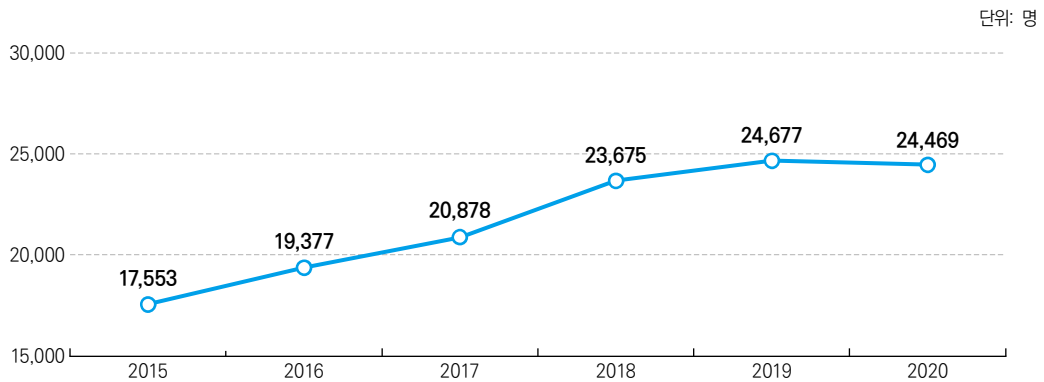
있다. 이는 이용 가구 수는 감소하였으나 이용 가구별 이용 시간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대 폭 증가하였던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표 7 참조).

나) 서비스유형·지역별·연령별 아이돌보미

활동돌보미를 기준으로 활동하는 서비스 유형, 활동 지역, 연령별로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2020년 12월 누적 활동돌보미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을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시간제(일반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2020년 12월 기준 23,69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이어 영아종일제서비스(4,603명), 질병감염아동서비스(2,391명), 기관연계서비스(1,255명), 종합형서비스(1,241명) 순으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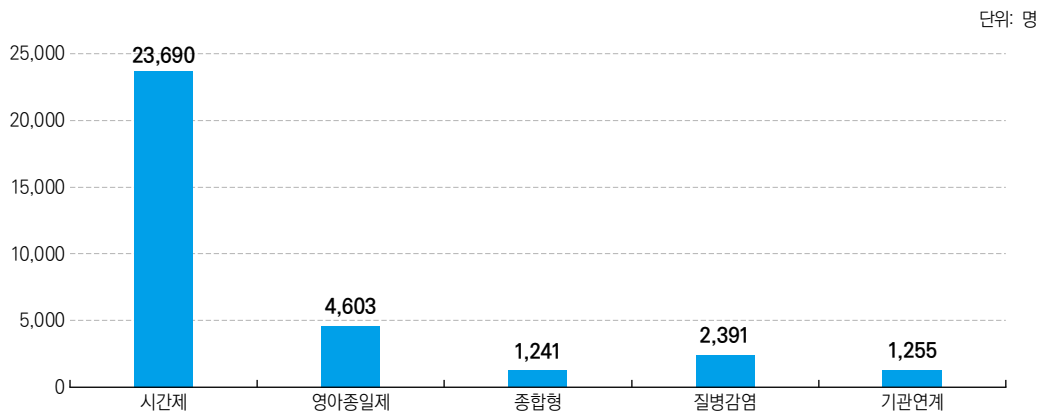
[그림 2] 2015년~2020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 II-2-5]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4.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 2020년 서비스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 II-2-6]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8. 바탕으로 재구성.

다음으로 <표 11>에 2020년 12월까지의 한 해 누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서비스 유형별 실제 활동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수를 정리하

였다. 전 지역에서 시간제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으나, 지역마다 서비스별 활동 아이돌보미 수의 경향은 달리

<표 11> 2020년 지역별, 유형별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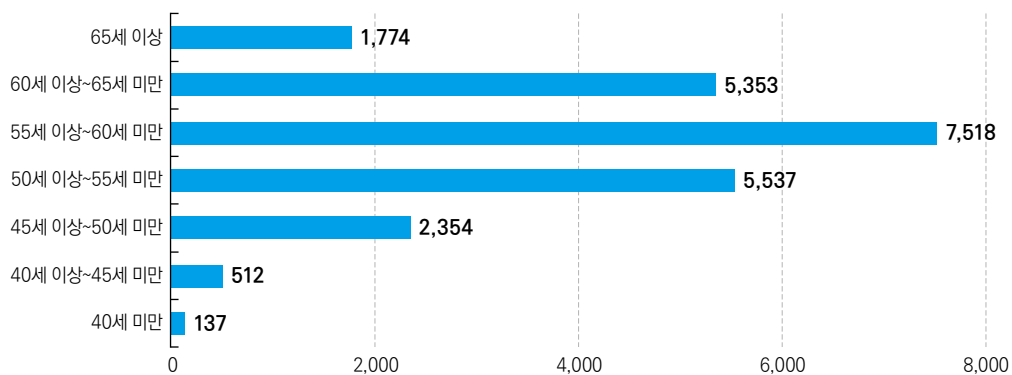
지역/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종합형	질병감염	기관연계
서울	3,479	981	194	255	320
경기	4,924	776	335	567	79
부산	1,824	291	117	85	100
대구	1,077	156	8	56	47
인천	1,174	206	8	122	81
광주	929	206	78	71	51
대전	579	139	0	57	48
울산	823	102	31	69	90
세종	313	49	1	25	4
강원	1,027	266	73	220	16
충북	714	137	54	61	21
충남	1,003	197	21	153	48
전북	1,065	233	51	105	63
전남	1,047	198	22	144	13
경북	1,879	345	199	190	151
경남	1,514	258	34	152	94
제주	319	63	15	59	29

출처: 이정원 외(2021). p. <표 II-2-14>

자료: 여성가족부(2020b).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통계(세부자료)). 2020년 12월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4] 2020년 아이돌보미 연령 분포 현황(소속돌보미 기준)

단위: 명



주: 소속돌보미 수는 누적 수치가 아닌, 월별로 산출된 수치로 본 결과는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함.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 IV-1-4]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8. 바탕으로 재구성.

나타났다. 질병감염아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567명)이며, 서울 255명, 강원이 220명으로 나타났다. 기관연계 아동돌보미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20명)이며, 경북이 151명, 부산이 1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종합해보면, 서비스 유형별, 지역별로 아이돌보미 수의 분포가 상이하여 지역 상황과 수요에 따라 유형별 아이돌보미 양성에 차별을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020년 12월 기준 소속돌보미로 등록되어있는 아이돌보미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55세 이상~60세 미만이 7,518명으로 가장 많고, 만 55세 이상인 아이돌보미는 총 12,998명으로 전체 소속돌보미의 63.2%로 나타난 반면, 40세 미만 아이돌보미는 137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게 보고되었다. 전반적으로 중고령층 이상의 인력이 아이돌보미로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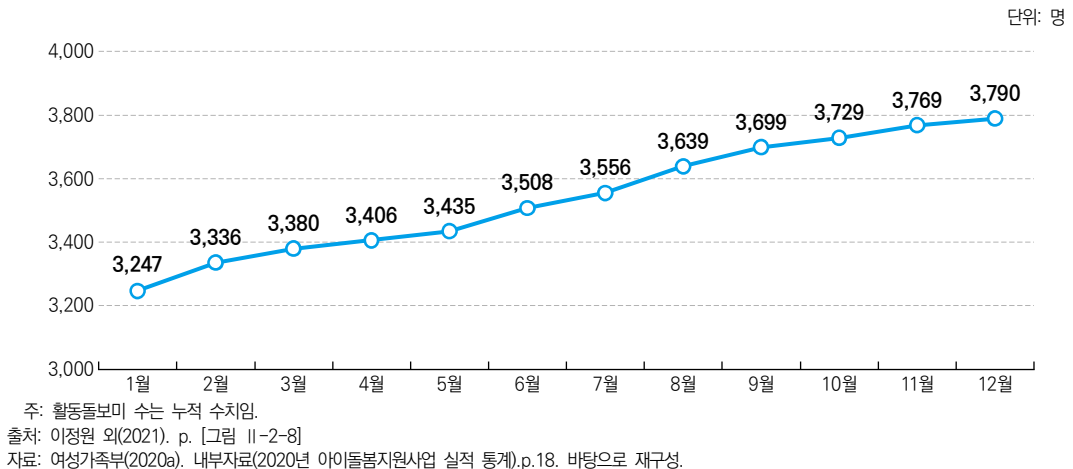
다) 자격증 보유 현황

2020년에 활동한 아이돌보미 중에 보육교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 의료인 자격증²⁹⁾ 등을 소지한 사람은 2020년 1월에 3,247명에서 시작하여 12월에 3,790명으로 집계되었다. 1년 동안 월별로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2020년 12월 기준 전체 실 활동 아이돌보미(24,469명) 중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아이돌보미(3,790명)의 비율은 15.49%로 나타났다.

라) 아이돌보미 교육 현황

2020년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양성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총 1,726명으로 가장 많았다(그림 5 참조).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양성교육을 면제받은 경우가 653명으로 총 양성교육 대상자 중 27.04%가 이에 해당하였다. 새일 센터를 통해 교육을 받은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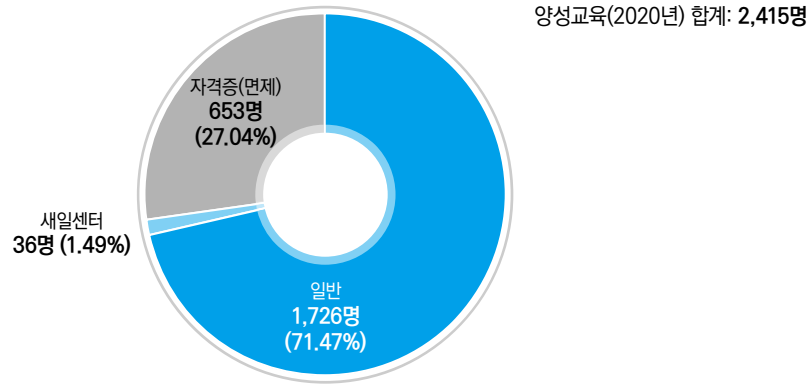
[그림 5] 2020년 유관자격증 소지 아이돌보미 현황(활동돌보미 기준)



29) 2021년 아이돌봄지원사업안내 62쪽에 따르면, 관련 자격증은 다음과 같음. ①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②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④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여성가족부, 2022a: 63)

[그림 6] 2020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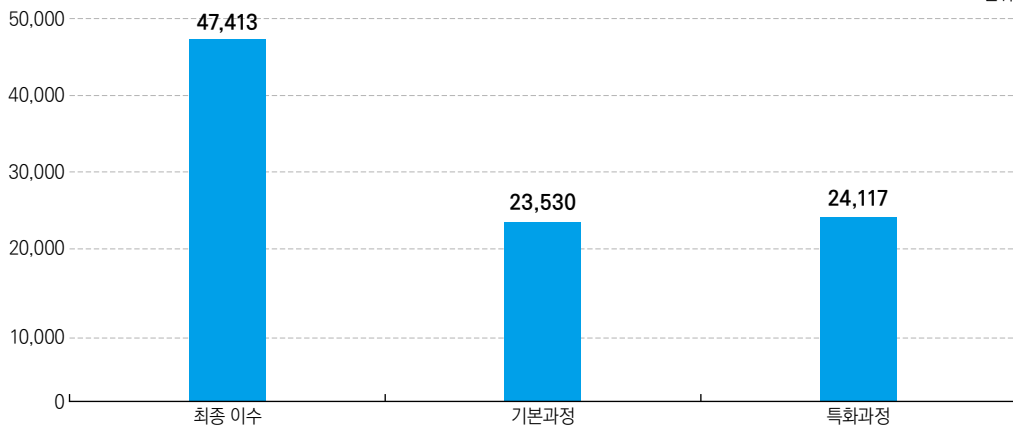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 II-2-10]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 p.19.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7] 2020년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현황

단위: 명



출처: 이정원 외(2021). p. [그림 II-2-11]

자료: 여성가족부(2020a). 내부자료(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실적 통계).p.19. 바탕으로 재구성.

우는 총 36명으로 가장 적었다(그림 5 참조).

2020년 12월 누적 기준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현황은 [그림 6]과 같다.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총 이수자는 47,413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 중 기본과정을 이수한 인원은 총 23,530명, 특화과정을 이수한 아이돌보미의 수는 24,117명

으로 나타났다.

라.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현황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책정된 여성가족부 예산은 2,777억 72백만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0.4% 증액된 것이다³⁰⁾.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2007년 약 3,952백만원의 예산으로 도입된 이후³¹⁾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특히 2019년 전년 대비 107.2%로 크게 확대되었다³²⁾. 2019년 당시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에서 150%까지 상향되고,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돌봄에 대한 정부지원율이 각 5%p씩 증가, 정부지원시간이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봄비에 대한 주휴 등 법정수당이 지급되는 등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후에도 아이돌봄지원예산은 정부지원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의

수요자 지원의 기초가 지속됨에 따라 3~1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세부 예산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은 시간제 돌봄(약 1,744억원)이며, 영아종일제 돌봄에 약 249억원,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에 약 500억원 가량이 배정되어 있다³³⁾.

2022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30%, 그 외 시·도 70%로 17개 시·도의 지방비 약 1,563억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예산은 약 4,323억원 규모이다³⁴⁾

〈표 12〉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추이(2007~202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87,899	108,377	224,592	243,993	251,493	277,772
영아종일제 돌봄	15,085	19,758	31,707	32,497	23,723	24,948
시간제 돌봄	55,703	65,714	137,426	140,845	156,435	174,479
한부모·장애아 부모 '가'형	-	-	-	-	-	1,542
청소년 부모 '가'형	-	-	-	-	-	1,062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9,373	13,719	42,555³³⁾	51,742	52,026	50,053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7,738	9,186	12,754	18,709	18,543	19,038
광역지원센터 운영	-	-	-	-	566	4,883
중영지원센터 운영	-	-	-	-	-	1,267
아이돌봄 사업관리 ³²⁾	-	-	150	200	200	500
전년대비 증감(%)	-	23.3	107.2	8.6	3.1	10.4

주: 1) 돌보미 교육, 4대보험·퇴직적립금 등

2) 정책연구 및 관서경비

3) 자료를 기반으로 통합 구성함

자료: 여성가족부(2018a). 2018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

여성가족부(2019). 2019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

여성가족부(2020c). 2020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

여성가족부(2021). 2021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30)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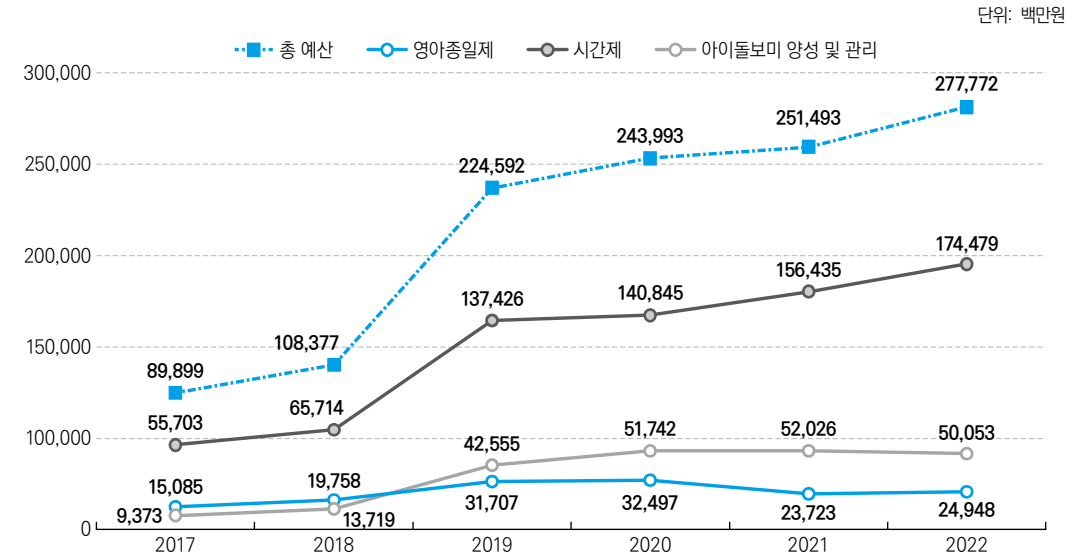
31) 2007년 예산은 국비 2,600,452천원, 지방비 포함 3,952,684천원임(권미경·박원순·엄지원, 2016: 77).

32) 여성가족부(2019b). 2019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요약.

33) 여성가족부(2022b).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34) 여성가족부(2022a). 202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그림 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국비) 추이(2007~2022)



주: <표 12>를 토대로 그림으로 구성함.

4. 사업 개선을 위한 법정 실태조사 도입

가. 정기적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 증가

본고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아이돌봄인력 양성을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부의 비용 보조 비율과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수요자의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을 추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확대가 이루어진 성과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 개선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8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책 개선을 객관적 데이터로 지원하기 위해 시범적 형태의 ‘실태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19년도에 아이돌봄서비스 전반의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도 46번 국정과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보미와 민간육아도우미에 대한 교육 및 자격관리 제도 도입’, ‘민간육아도우미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아이돌봄서비스 등 개별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³⁵⁾. 제안된 정책 과제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하겠다.

35)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나.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도입과 추진 전략

앞서 실시된 2018년도 (시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³⁶⁾에서는 이후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법정조사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³⁷⁾. 이러한 제안은 2020년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에 반영되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³⁸⁾. 아이돌봄지원법 제29조의2와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3년)와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³⁹⁾가 최초로 진행 중이다. 2022년 제1차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는 근거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실태’,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실태’,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수요’ 등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수요·공급 측면의 욕구 파악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 문항은 물론,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는 아동의 돌봄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관한 정책 변동을 포괄하는 조사로 기획,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개별 육아서비스 혹은 육아정책에만

초점을 둔 육아지원체계의 분절적인 분석을 넘어 통합적인 육아지원체계 구축 및 기관 또는 가정 돌봄 등 어떤 형태라도 대리 돌봄의 수요가 있는 육아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데이터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서는 단순히 육아서비스 중 하나로써 개별적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공급 실태 조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층의 양육실태 전반의 파악과 아이돌봄서비스를 대체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동의 영향까지 파악하려는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본적인 실태와 더불어 유관한 육아지원 정책의 변동과 연동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수요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한 조사도 포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연혁에서도 파악할 수 있듯이 최근 몇 년 간 아이돌봄서비스는 급격한 정책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으로, 2022년 제1차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에 대한 기대가 높다.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영유아와 초등학생의 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가 공공의 개별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기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6) 이정원·권미경·이정림·이윤진·이혜민(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37) 여성가족부(2018). 2018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연구.

38) 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의2(아이돌보미 실태조사)[본조신설 2020. 5. 19]

39) 법상으로는 ‘아이돌보미 실태조사’로 명명됨.